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조계원 · 이병진
안호영 · 김주영 · 박홍배
오세희 · 안도걸 · 김영환
박 정 · 이학영 · 이용우
허 영 · 서미화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,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·고령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아동·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, 교육, 안전,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, 주거약자의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「주거기본법」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,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

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3조 및 제16조).

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장애인·고령자 등”을 “장애인·고령자·아동·청소년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장애인·고령자 등”을 “장애인·고령자·아동·청소년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 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 정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7. <u>장애인 · 고령자 등</u> 주거약자 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. · 9. (생 략) 제16조(주거약자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장애인 · 고 령자 등</u>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장애인 · 고령자 · 아동 · 청소 년 등</u> ----- ----- ----- 8. · 9.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주거약자 지원) ① ----- ----- <u>장애인 · 고 령자 · 아동 · 청소년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